객관식진도학습

부동산공시법 배상용 교수 3회 (03/26)

1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축척변경에 대한 설명이다. 옳은 것은?

- ①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의 1/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② 지적소관청은 시·도지사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목적·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등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- ③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 공고가 있는 날부터 3월 이내에 시행 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 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.
- ⑤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30일이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,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.

2. "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"상 축척변경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- ①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.
- ②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에 축척변경을 할 수 있다.
-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④ 축척변경 측량결과도에 따라 면적을 측정한 결과 축척변경 전의 면적과 축척변경 후의 면적의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축척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한다.
- 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 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.

3. 다음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정정을 위한 절차이다. 옳은 것은?

- ① 등기된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정정은 등기필증,등기완료통지서,등기사항증명서,등기 신청접수증에 의하여 정정한다.
- ②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.
- ③ 지적측량적부심사 의결서의 내용에 따라 경계와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할 수 없다.
- ④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토지표시에 대하여 오류를 발견한 경우 소유자에게 정정 신청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⑤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면적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.



객관식진도학습

부동산공시법 배상용 교수 3회 (03/26)

4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결 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 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·확인하여야 한다.
- ③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전 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납부한다.
- ④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 한 후 토지의표시가 불일치함을 등기관서에 통지한다.
- ⑤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, 등기완료통지서,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.

객관식진도학습

부동산공시법 배상용 교수 3회 (03/26)

객관식진도학습 정답

1. 4

- ①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의 2/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② 지적소관청은 시·도지사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목적·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등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- ③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 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⑤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,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.
- 2. ④ 축척변경 측량결과도에 따라 면적을 측정한 결과 축척변경 전의 면적과 축척변경 후의 면적의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축척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한다.

3. 4

- ① 등기된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정정은 등기필증,등기완료통지서,등기사항증명서,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정정한다.
- ②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으나 토지 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 할 수 없다.
- ③ 지적측량적부심사 의결서의 내용에 따라 경계와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할수 있다.
- ⑤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면적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다.

4. ②

- ①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③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전산정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.
- ④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.
- ⑤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적소관청이 조사 결정 하여 등록한다.